2025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자원 공모 안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되어있는 예술성을 발견하여 발전시킬수 있도록 '2025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사업공모를 진행합니다. 2021년부터 진행했던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성장 및 활동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장애예술인 및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과 신청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5년 3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단체)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 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개인)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

○ 선정규모

- 총 지원금액 (750,000천원)

선정 규모		지원 한도
(단체)	20~30건 내외	평균 22백만원
(개인)	30건 내외	정액 3백만원

※ 최종 선정 건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최 및 주관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문의 : 예술본부 예술지원팀 (031-231-0884, 7236)

※ 평일 기준 10시부터 16시까지 전화 문의 가능, **방문 시 전화로 사전 예약**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5. 03. 04.(화) ~ 03. 18.(화) 16:00, 15일간 ○ 심 의 : 2025. 03. 24.(월) ~ 2025. 04. 03.(목) - 행정심사, 서류, 인터뷰 심의 ※ 개인의 경우 행정심사, 서류심의만 진행됨 ○ 결과발표 : 2025. 04. 07.(월)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 6기일이는 무단이랑에 따다 또이할 구 ㅆㅂ니다.	일정	 ○ 심 의: 2025. 03. 24.(월) ~ 2025. 04. 03.(목) - 행정심사, 서류, 인터뷰 심의 ※ 개인의 경우 행정심사, 서류심의만 진행됨 ○ 결과발표: 2025. 04. 07.(월) (예정)

□ 2025년 주요 변화

구분	2025년
연속 지원	•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 이력이 있는 장애예술단체의 경우,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신청 시 지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필요한 예산수립 및 중장기 운영 방향 로드맵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서식1-4 참고 ※ 미제출시 행정심사에서 탈락
컨설팅	• 장애예술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시행 으로 공모 시 제출된 <u>사업계획서에</u> 대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교부신청서에 의무 반영토록 함
역량 강화 교육	• 선정 단체 대표자 대상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선정 예술인(개인)을 대상으로 <u>개별 컨설팅</u> 진행 ※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 불참 시 차기 연도 심의에 불이익

2025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구분	단체	개인
사업목표	·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등 예술적 성장 및 육성을 도모하는 전문예술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의 활동 및 성장을 위한 과정형 활동지원으로 실험과 도전이 기능한 환경 제공
신청자격	 (단체)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이상인 단체, 혹은 프로젝트 참여자(수혜자) 중 장애인이 30%이상인 단체(관객 수혜자 불포함 프로젝트 주요 참여자 변경 불가 → 변경시 변경신청서 필수 제출 참 여 장예예술인 명단 필수 제출 ※ 활동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 ※ 교육단체는 모집 완료시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단체 ※ 공고일 전에 등록된 단체 	1.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 등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세부기준표참고)•근거: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3.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신청장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르 전체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 단체 지원시 활동/교육 지원신청서 양식 확인 후 제출	
운영기준	·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교육 - 낭독, 쇼케이스,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공연전시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발표 - 활동 및 교육 장소는 경기도에 한정함	 ·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교육 - 구체적인 작업계획 수립·준비 및 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 (향후 지속가능성 판단 필요) - [창작활동 예시] 예술활동 기반의 창·제작비, 기획준비금, 예술프로젝트, 실험 및 담론 등 ※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정함 [문학 분야] ·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교육 - 원고제출 및 심의를 통해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 미발표신작, 미완성작품(습작 등) 모두 지원 가능함 - 원고제출 ※ 필수제출자료 양식 내 원고기재 · 소설·동화(단편, 중·장편), 시·시조·동시, 평론, 수필, 아동문학, 희곡 등

지원규모	: 건당 평균 ※ 접수 및 심의 ※ 2024년 지원 연속 지원 추	 .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단체 대상 평가모니터링 결과 가점제로	• (개인) 총 30건 내외(약 90백만 : 지원비 3백만원(정액) ※ 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특	ŕ
지원방침	- 창작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획, 운영, 공간대여, 출연, 시업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비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석 의무 (단체 대표 ※ 불참시 차기 연도 지원사업 심의에 불이익 - 선정 이후 재단에서 제공하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이력이 있는 단체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예산수립과 중장기 운영방향 로드맵 제출 - 대표자 외 정산 담당자 필수 지정 및 정보 기재의무 - 정산 시 회계감사 검증 필수		라서 가능) 나무	
추진절차	사업신청	시전 컨설팅 심의 및 글과발표 → 및 지원금 교부	교육프로그램 → 운영 및 → 워크숍 →	정산결과 보고
심의방침	· 심의방식 - 행정 심사 - 서류 심의 - 인터뷰심의	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니 : 질의응답(단체별 10분 이내) 라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음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 심의방식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등 	등 검토
	·단체			
	항목		기준(내용)	배점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 는 프로그램이다.		30	
심의기준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참여자 모집, 공간 활용, 프로그적이고 명확하며, 예산 집행계획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30
	사업 추진역량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30
	기대효과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	10
		±1 =1		

합 계

100

• 개인

항목	심의기준(내용)	배점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활동계획(프로젝트) 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30
사업 추진역량	•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 예술성, 독창성, 참신성 등 •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30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10
	합 계	100

・개인(문학)

항목	심의기준(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원고)이다. •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제출 원고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30
사업 추진역량	•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 •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 예술성, 독창성, 완성도 등	30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10
합 계		100

※ 2024년 선정단체 대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가점(10점 내외) 부여

지원신청 및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2025. 03. 04.(화) ~ 03. 18(화) (15일간) (16:00까지)
-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의무사항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은 25년 10월 31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 · 단체 대표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 개인 선정자는 개인 컨설팅 등 모든 과정에 의무 참석해야 함
- ·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교부신청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예산 수립(사업 예산의 10%이내), 중장기 운영방향 로드맵 제출
-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 사업 기간 내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 협조하여야 함
- · 모니터링 평가 결과지표는 차년도 공모사업 심의에 반영됨
- ·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예술인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 · 홍보물 제작 시 주최·주관·사업명 등 표기
- ·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및 선정

- ㆍ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제외 대상	 학교, 종교기관, 친교 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중복지원 불가)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시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유사중복의 개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기타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음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 및 지원방침(참석의무)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예술지원팀 / 031-231-0884, 7236 ※ 평일 10시~16시까지 운영·문의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애예술인(단체)의 편의를 위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방문 시, 현장 접수 가능